회 의 록

안 건	○ 보고 의안번호 제2026-재심-13-1-1호. 2026년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재심-13-1-2호. 2026년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의안번호 제2026-재심-13-1-3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안) ○ 심의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1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4-1-1032)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2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6451)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3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5-0228)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4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5-1-176)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5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24947)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6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3194)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7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19727)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8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8348)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9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1767)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10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531)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11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8927)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12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10645)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13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4-1-568) 의안번호 제2026-재심-13-2-14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7147)
개 최 일 시	2026년 10월 16일(금요일)
장 소	영상회의
출 석 위 원	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 출석

회 의 내 용

의안번호	결정사항	세부내용
제2026-재심-13-1-1호	원안 의결	-
제2026-재심-13-1-2호	원안 의결	-
제2026-재심-13-1-3호	원안 의결	
제2026-재심-13-2-1호	보상	붙임1 참조
제2026-재심-13-2-2호	일부 보상	붙임2 참조
제2026-재심-13-2-3호	일부 보상	붙임3 참조
제2026-재심-13-2-4호	보상	붙임4 참조
제2026-재심-13-2-5호	기각	붙임5 참조
제2026-재심-13-2-6호	보류	붙임6 참조
제2026-재심-13-2-7호	보류	붙임7 참조
제2026-재심-13-2-8호	보상	붙임8 참조
제2026-재심-13-2-9호	일부 보상	붙임9 참조
제2026-재심-13-2-10호	기각	붙임10 참조
제2026-재심-13-2-11호	기각	붙임11 참조
제2026-재심-13-2-12호	기각	붙임12 참조
제2026-재심-13-2-13호	기각	붙임13 참조
제2026-재심-13-2-14호	기각	붙임14 참조

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13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4-1-1032)

가. 피접종인 정보

○ OOO/여성/61세/아스트라제네카 1차/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접종 후 두드러기가 발생한 시점은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며, 이후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지속 기간만으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접종 이전 피부묘기증의 과거력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두드러기의 발생 시점과 임상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64511)**

가. 피접종인 정보

○ OOO/여성/61세/아스트라제네카 2차/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접종 당일부터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과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병력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만성화된 두드러기까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 하지부종과 관련하여, 접종 전부터 이뇨제의 지속적인 복용력이 확인되고 기왕증으로 저나트륨혈증이 있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위장염·결장염, 천추통증 등 그 외 증상도 두드러기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일부 보상(두드러기 : 보상, 그 외 질환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5-0228)**

가. 피접종인 정보

○ OOO/남성/61세/노바백스 2차/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의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쟁점이 확인되지 않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일부 보상(두드러기 : 보상, 그 외 질환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5-1-176)**

가. 피접종인 정보

○ OOO/남성/61세/아스트라제네카 2차/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접종 후 5일경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증상 발생까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또한 두드러기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임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24947)**

가. 피접종인 정보

○ OOO/여성/23세/화이자 2차/자가면역성 뇌염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성 뇌염 발생에 관한 일부 증례보고만으로는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피접종인의 난소 낭종과 관련하여, 난소 종양이 자가면역성 뇌염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가면역성 뇌염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접종 후 증례보고된 사례에서도 접종 후 5~18일 이내에 발생한 반면, 본 사례는 접종 후 약 70일경 주요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여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3194)**

가. 피접종인 정보

○ OOO/여성/43세/화이자 2차/시신경척수염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의무기록상 시신경척수염으로 진단된 사례로, 예방접종 후 하지 저림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여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며,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원인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시신경척수염 진단 시 자가면역항체인 아쿠아포린-4 항체(AQP4-IgG) 검사 결과가 중요하며, 해당 항체가 양성이라면 백신과 척수염의 연관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확인이 필요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류

라. 기타

○ 피접종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상 AQP4-IgG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붙임 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19727)**

가. 피접종인 정보

○ OOO/여성/60세/화이자 3차/시신경척수염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AQP4-IgG 양성은 시신경척수염의 진단에 중요한 지표이나, 항체 자체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기저질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자가면역성 소인에 작용하여 질환의 발현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AQP4-IgG 양성 시신경척수염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항체 양성 및 접종 이전 유사 증상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류

라. 기타

○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붙임 8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8348)**

가. 피접종인 정보

○ OOO/여성/54세/모더나 2차/시신경척수염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접종 후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여 시신경척수염 등으로 진단받았으나, AQP4-IgG 음성 및 MOG 항체 양성이 확인된 사례로, 앞선 AQP4-lgG 양성 시신경척수염과는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MOG 항체 연관 질환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관련성에 관한 역학연구는 제한적이며, 발생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9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1767)**

가. 피접종인 정보

○ OOO/남성/56세/화이자 3차/급성횡단성척수염,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예방접종 후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여 영상검사 등을 통해 급성 횡단성척수염으로 진단된 사례로, 관련 역학적 근거가 존재하고 림프종의 중추신경계 침범에 따른 증상으로 볼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반면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은 예방접종 후 약 2개월 만에 진단되었으나, 일반적인 암의 발생 및 증식 과정을 고려할 때 최초 암세포의 발생 시점은 예방접종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예방접종이 기존 암세포의 증식이나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장애일시보상금은 급성횡단성척수염에 따른 하지 기능장애와 관련된 청구로, 해당 질환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였으므로 장애일시보상금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일부 보상(급성횡단성척수염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 보상,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 진료비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0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531)**

가. 피접종인 정보

○ OOO/남성/38세/화이자 3차/급성 골수성 백혈병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과거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완전관해* 상태를 유지하다가 예방접종 이후 재발(직접사인 : 급성 골수성 백혈병)한 사례이나, 현재까지 예방접종이 백혈병의 재발이나 진행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근거와 기전적 가능성이 부재함. 따라서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암 치료 후 검사에서 암의 징후나 증거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상태

○ 한편, 예방접종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한 뇌출혈과 관련하여, 피접종인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를 임의로 중단한 이력이 있고 당시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등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 확인됨. 이러한 기저질환이 뇌출혈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8927)**

가. 피접종인 정보

○ OOO/남성/61세/모더나 3차/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백혈병의 전단계로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병태생리적 기전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질환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및 의학이론 또는 경험칙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방사선 치료 이력 등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확인되므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10645)**

가. 피접종인 정보

○ OOO/남성/59세/아스트라제네카 1차/다발성 골수종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접종 당일부터 복통 및 배뇨장애가 발생하고 이후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되어 60일 만에 사망한 사례이나, 다발성 골수종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질환으로 보기 어려움

○ 다발성 골수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예방접종이 다발성 골수종의 증식이나 악화를 촉진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및 의학이론 또는 경험칙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4-1-568)**

가. 피접종인 정보

○ OOO/남성/34세/얀센 1차/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피접종인에게 발생한 급성 위장관염은 접종 후 약 1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에서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역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재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7147)**

가. 피접종인 정보

○ OOO/여성/59세/화이자 3차/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백혈병이 사망의 원인인 점이 명확하나, 앞선 유사 사례에서 논의된 질환의 발생 및 진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및 의학이론 또는 경험칙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